

## 제 6 부 행정 및 조직규정

### 제 17 장 투명성

####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며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행정 결정 또는 해석을 말한다.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가. 구체적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준사법적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나 결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린 결정.

#### 제17.2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촉선을 지정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접촉선은 당해 사항에 대한 책임부서 또는 책임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요청 당사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 제17.3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자국의 법령,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은,

- 가. 자국이 채택할 것을 제안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나.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제17.4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한 최대한, 각 당사국이 제안된 조치나 당해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이 협정에 따른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실제 조치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에 대해 통보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당사국은 신속하게 실제의 또는 제안된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통보나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는 그것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적절한 통보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공식적이고 공공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당해 당사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7.5조 국가 보조에 관한 정보의 교환**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국가 보조의 개별 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17.6조 행정 절차**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제17.3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어떤 경우에도, 절차가 개시될 때, 절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당해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및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되고,
-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경우 최종 행정 조치에 앞서 그러한 인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며,
- 다. 그 절차는 국내법에 따른다.

### 제17.7조 재심과 상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최종 행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목적상,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러한 행정행위의 정정의 목적상, 사법적 또는 행정적 법정 또는 절차를 확립 또는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은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정이나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다음의 권리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 가. 당사자들 각자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 나. 증거와 제출된 기록 그리고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작성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적 재심에 따른 문제의 행정조치에 관한 그러한 결정이 관련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해 이행되고, 동 부서 또는 당국의 향후 관행이 이에 따르도록 보장한다.